# 금융자산 운용지침(안)

제정 2022. 04. 28 개정 2023. 12. 21 [재경관리부 042-600-8180]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금융자산 운용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50조(자산운용원칙) 및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금융자산 운용 공통지침(이하 '공통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금융자산 운용의 원칙과 방향을 마련하여 금융자산운용과 위험관리기능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1>

제2조(적용 범위) 금융자산 운용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유동 금융자산, 비유동 금융자산 등에 대해 적용하며, 국고보조금 등 사용이 제한된 자금, 자산취득과 투자사업에 수반되는 채권이나 증권, 공제 가입 출자금 등 지침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개정 2023.12.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3.12.21>

- 1. "금융자산"이란 회사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유가증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성 대기자금을 말한다.
- "전담부서" 란 금융자산운용 계획 수립, 자금의 운용관리 등 금융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단기자산"이란 만기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산, "중장기자산"이란 만기 1년 이상으로 운용되는 자산을 말한다.
- 4. "목표수익률"이란 금융자산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자산 배분에 앞서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지표로써, 보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의 최소 목 표치를 말한다.
- "허용위험한도" 란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달될 위험 중 허용가능한 한 도를 말한다.
- 6. "연기금투자풀"이란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주간운용사가 위탁받은 운용자금을 하부 운용사를 통해 운용하는 펀드오브펀드(Fund of Funds: 재간접투자기구로 펀드에 재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펀드)형태로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1년도에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 제4조(적용 유형) 공사의 공통지침 적용 유형은 B유형(기준금액이 최근 3년 평균 1,000억원 미만인 기관)으로 하다.<개정 2023,12,21>
- 제5조(유형 관리) ① 공사의 유형 구분은 공통지침의 기관별 유형 구분 방법에 따른다.
- ② 한번 결정된 유형은 3년간 유지하고, 유지기간 종료 후 기준 금액 변화 또는 중요한 운용 정책방향 등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유형 변경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유형 변경을 해야 하 며. 유형 변경에 의한 지침 개정은 기획재정부와 혐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12.21>

### 제 2 장 의사결정 체계

- 제6조(금융자산운용 목적)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금융자산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전담부서 등 설치·운영) ① 공사는 금융자산 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융자산 운용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금융자산 운용 전담부서는 재경관리부로 한다.
- ② 공사는 금융자산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융자산운용업무 심의기구(금융자산운 용위원회)를 운영한다.<개정 2023,12,21>
- 제8조(전담부서 역할) 전담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금융자산 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의1(금융자산운용위원회) ① 금융자산운용관리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며,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3.12.21>
- 1. 100억원 이상의 중장기운영가능 금융자산운용계획
- 2. 제1호 금융자산운용의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설정
-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자산 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자금담당임원(본부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23,12,21>
- ③ 외부위원은 자산운용, 재무, 금융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국가재정법 시 행정」제35조 제2항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23.12.21>
- ④ 위원회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간 금융자산운용규모가 제1항1호에서 정한 규모 이하로 예상될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급격한 시장 변동에 의해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장의 요청 등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3.12.21>
-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 설 2023.12.21>

- ⑥ 위원회에 선정된 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표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표2]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1>
- 제8조의2(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선정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3.12.21>
- 1.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의원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자
-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신설 2023.12.21>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1>
- ④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12.21>
- 제9조(보고체계) 금융자산 운용의 보고체계는 공사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 제10조(담당자 지정 등) 공사는 경력, 자격 등 전문성을 갖춘 자를 우선하여 금융자산 운용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인력 운영 여건상 담당자 전문성을 갖출 수 없는 경우 교육 등을 통해 담당자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 3 장 금융자산 운용정책

- 제11조(목표수익률) 전담부서는 금융자산운용 목적에 따라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해야 하고, 목표수익률은 전체 자산과 금융자산 운용 기간 유형에 따라 단기자산 및 중장기자산으로 구분한다.
- 제12조(전체 자산 목표수익률)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으로 운용되는 전체 자산의 목표수익률은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의 목표수익률 평균값으로 한다.
- 제13조(단기자산 목표수익률) 단기자산의 목표수익률은 벤치마크지수와 추가 기대수익률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벤치마크지수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고시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수신금리(당해연도 매월 수신금리의 평균금리)로 하고, 추가 기대수익률은 최근 3개년 벤치마크지수와 실제 운용수익률 차이의 평균값으로 한다.<개정 2023.12.21>

- 제14조(중장기자산 목표수익률) 중장기자산의 목표수익률은 벤치마크지수와 추가 기대수익률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벤치마크지수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고시 1년 정기예금 수신금리(당해연도 매월 수신금리의 평균금리)로 하고, 추가 기대수익률은 최근 3개년 벤치마크지수와 실제 운용수익률 차이의 평균값으로 한다. 단, 추가 기대수익률이 없는 경우 단기자산 추가 기대수익률을 적용한다.<개정 2023, 12, 21>
- 제15조(허용위험한도) 전담부서는 금융자산 운용 목적에 따라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하여 금 융자산을 운용해야 하고, 허용위험한도는 전체 자산과 금융자산 운용 기간 유형에 따라 단 기자산 및 중장기자산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12.21>
- **제16조(전체 자산 허용위험한도)**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으로 운용되는 전체 자산의 허용위험 한도는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의 허용위험한도 평균값으로 한다.
- **제17조(단기자산 허용위험한도)** 단기자산의 허용위험한도는 단기자산 추가 기대수익률로 한다. <개정 2023.12.21>
- **제18조(중장기자산 허용위험한도)** 중장기자산의 허용위험한도는 중장기자산 추가 기대수익률로 한다.<개정 2023.12.21>
- 제19조(운용 형대) 공사의 금융자산 운용은 내부인력을 통한 직접운용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운용으로 할 수 있으며, 직접운용 또는 위탁운용 여부는 운영자금의 규모, 소요시기, 안전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23.12.21>
- 제20조(직접운용) 단기자산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확정수익(금리)형 금융상품을 직접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기자산의 경우라도 수익성 추구를 위해 위탁운용을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는 연기금투자풀 상품에 가입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23.12.21>
- 제21조(위탁운용) ① 직접운용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운용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운용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탁운용에는 기획재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위탁운용제도인 연기금투자풀을 포함하다.
- ② 단기자산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사에서 운영하는 자산구성은 신용등급 최고 수준 상품으로 하며, 연기금투자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안전성과 수익률을 고려하여 투자 유형을 선정한다.
- ③ 중장기자산은 수익성 추구를 위해 수익배당(시장금리)형 금융상품을 위탁운용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용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자산 50% 이내로 하고, 수탁사에서 운영하는 자산 구성은 신용등급 최고 수준 상품으로 한다.<개정 2023.12.21>

### 제 4 장 위험관리

제22조(관리위험) 공사의 금융자산 관리위험은 신용위험, 환위험, 유동성 위험으로 한다.

제23조(위험의 정의) 관리위험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실위험을 말한다.
- 2. '환위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화자산(부채)의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을 말한다.
- 3. '유동성위험'은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 능력 위기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제24조(관리정책) 위험의 판단지표, 측정방법, 수준, 수준별 대응조치방안, 관리조직 등 위험별 관리정책은 공사의 리스크관리규정 및 재무 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 따른다.

제25조(행위준칙) 금융자산운용담당자는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이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개정 2023.12.2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위 원 명 : (인)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보유하고 있다.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예	아니오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예	아니오
	등을 진행 중이다.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예	아니오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예	아니오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sup>\* &#</sup>x27;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금융자산운용위원회 위원

성명: (인)

상기 본인은 금융자산운용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행위 금지
-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